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경우 그 중간에 대금 지급〉

■ 운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5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경우 그 중간에 대금지급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운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3.
3. 회 부 일 : 2024. 9.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이용대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유통의 어려움 등 경영상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대체휴일과 겹쳐 장기간 연휴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함. 실제로 2017년 10월 연속 공휴일이 지속된 바 있으며 2024년 추석 명절의 경우 5일 연속 공휴일이고 2025년 추석에도 7일 연속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법에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 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연속

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
점주들의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경우 그 중간에 대금 지급

- 개정안은 ①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고, ② 공휴일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그 중간 일자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② (생략) <u><신설></u>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매출전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연속으로 3일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되는 공휴일 중간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한다.</u>

-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인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그 지급일이 정해짐.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¹⁾ 그 지급예정일이 공휴일이거나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여야 함.²⁾

□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매출전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공휴일이 4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중간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영업자 등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첫째, 대량이체가 필요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펌뱅킹(firm banking)³⁾ 방식으로 지급되어, 지급오류 발생 시 카드사와 은행 양측에서 전자문서 오기, 전산 오류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므로,

-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카드사와 은행 직원의 공휴일 근무가

1)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2조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①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영업일을 초과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과 해외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하 생략)

2)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1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신용판매에 대하여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접수한 경우, 동 접수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신용판매대금 지급기일에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②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3) OTP(One Time Password) 등 인증서 없이 기업과 은행이 전용선을 통해 약속된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이미 약관에 따라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명시한다면 대금 지급기한을 하루 연장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① 이미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영세·중소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6%)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접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선노력⁴⁾을 하고 있다는 점, ②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⁵⁾ 및 비영업일 이체를 위한 비용 추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4)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사들과 대금지급일 단축에 대하여 제도개선하기로 합의함(참고자료 참조).

5) 공휴일에는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대금청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자금조달 비용 증가

【참고자료】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⁶⁾」 중 일부

①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 (현황) 카드사는 가맹점에 “**결제일+3영업일**(매입일+2영업일)”이내 대금을 지급하되, 영세·중소가맹점은 일부·한시적 단축 중*

* (연매출 ~5억원) “결제일+2영업일”로 단축 운영 중
(연매출 5~30억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결제일+2영업일”로 한시단축(20.3.~25.9.)

- 현재 자금조달비용은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일부터만 인정되고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에 따른 비용은 불인정

< 자금조달비용 인정범위 >



- (개선방안) 영세·중소가맹점은 “**결제일+2영업일**” 이내로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하고,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주기 단축 유도

-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

*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전표 매입일부터 자금조달비용 인정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24.8. p.10